(A면)

일본국세관
세관 양식 C 제 5360-C호

휴대품・별송품 신고서

아래 및 뒷면의 사항을 기입하여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족이 동시에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1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탑승기편명 (선박명)		출 발 지	
입 국 일 자	년 월 일		
성 명 (영 문)	성 (Surname)	이름 (Given Name)	
현 주 소 (일본국내 체류지)			
	전화번호 ( )		
국 적		직 업	
생 년 월 일	년 월 일		
여 권 번 호			
	20 세 이상	6 세 ～ 20 세 미만	6 세 미만
동 반 가 족	명	명	명

※ 아래 질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□ 에 ”✓”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다음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까?	있음	없음
① 마약, 총포, 폭발물 등 일본으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 (B면 1. 참조)	□	□
② 육가공품, 채소, 과일, 동식물 등 일본으로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(B면 2. 참조)	□	□
③ 금지금 또는 금제품	□	□
④ 면세 범위 (B면3. 참조) 를 초과하는 구입품 (산 물품),선물, 기증품등	□	□
⑤ 상용 물품 · 상품 견본(샘플)	□	□
⑥ 타인이 맡긴 물품 (여행 가방 등의 운반 도구와 이유가 불분명하게 건네진 것을 포함)	□	□

＊상기 항목에서 「있음」을 선택한 분은 입국시에 가지고 온 물품을 B면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100만엔 상당액을 초과하는 현금, 유가증권 또는 1kg 초과하는 귀금속등을 가지고 있습니까?	있음	없음
	□	□

＊「있음」을 선택한 분은 별도로 「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· 수입신고서」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별송품 입국할 때 휴대하지 않고 우편물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별도로 보낸 짐 (이삿짐을 포함)등이 있습니까?

□ 있음 (개) □ 없음

＊「있음」을 선택한 분은 입국시에 가지고 온 물품을 B면에 기입한 후 이 **신고서를 2장**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직원의 확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. (입국후 6개월이내에 수입할 물품에 한함)

별송품 통관시, 세관에서 확인을 받은 신고서가 필요합니다.

《주의사항》

해외 또는 일본 출국시 및 입국시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,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운반하는 물품 등 일본으로 반입하려고 하는 휴대품· 별송품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여 반입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 신고서 기재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.

서 명

(B면)

※ 입국시 휴대하여 반입한 물품을 다음 표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A면 1 및 3에서 모두 「없음」을 선택한 분은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.)

(주의) 「기타품명」란에는 신고하는 입국자 본인 (동반 가족 포함)의 개인적 사용 물품에 한하여 1 품목당 해외 시가 합계액이 1 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. 별송품도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.

주 류			병	＊세관 기입란
담 배	궐 련		개비	
	전 자		갑	
	엽궐련		개비	
	기 타		그램	
향 수			온스	

기타 품명	수 량	가 격

＊세관 기입란

엔

1. 일본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대표적인 물품

① 마약, 향정신성의약품, 대마, 아편, 필로폰, MDMA, 지정 약물 등
② 권총 등의 총포, 총포탄, 권총부품
③ 폭발물, 화약류, 화학 병기의 원재료, 탄저균 등의 병원체 등
④ 지폐, 화폐, 유가증권, 신용카드 등의 위조품
⑤ 음란잡지, 음란ＤＶＤ, 아동포르노 등
⑥ 가짜명품, 해적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

2. 일본으로 반입이 제한되어 있는 대표적인 물품

① 엽총, 공기총 및 도검류
② 워싱턴 조약에 따라서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제품 (악어 · 뱀 · 땅거북 · 상아 · 사향 · 선인장 등)
③ 사전에 검역 확인이 필요한 살아있는 동식물, 육가공품 (소시지 햄 · 말린 쇠고기를 포함) , 채소, 과일, 쌀 등

＊ 동식물검역카운터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3. 면세범위 (1인당, 승무원은 제외함)

・주류 3 병 (1 병당 약 ７６０ml)
・궐련 200개비(외국제・일본제의 구별없음)
　＊ 단, 20 세 미만인 경우 주류와 담배가 면세되지 않습니다.
・해외 시가의 합계액이 ２０만 엔을 넘지 않는 물품
　(입국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에 한함)
　＊ 「해외 시가」는 해외에서 구입한 가격을 말합니다.
　＊ 한개에 ２０만엔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전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.
　＊ 6 세 미만의 어린이는 장난감 등 본인이 사용할 것 이외의 물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휴대품・별송품 신고서를 기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일본으로 입국(귀국) 하는 모든 분들은 법률에 따라 이 신고서를 세관직원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. 앞으로도 세관검사에 협력을 부탁합니다.